

제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나339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나339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2가단204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 선고 2017. 8. 9.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2가단204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658m²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43, 2, 37, 38, 39, 40, 41, 42,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건물 12.54m², 같은 도면 표시 45, 40, 39, 46, 47,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건물 2.34m²,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53, 21,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건물 27.13m², 같은 도면 표시 50, 54, 26, 51,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건물 7.34m², 같은 도면 표시 20, 57, 58, 59, 60,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건물 2.63m²를 각 철거하고,

나. 제주시 C 대 658m²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25, 2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돌담장 약 4m,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30, 2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돌담장 약 2m², 같은 도면 표시 38, 41, 42, 43, 44, 39,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돌담장 약 3m²,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10, 11, 51, 52, 53, 54, 55,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돌담장 약 8m를 각 철거하고,

다. 제주시 C 대 658m²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52m²를 인도하고,

라. 19,08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2015. 7. 21.부터 위 다.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5,2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중 "다. 이 사건의 경우"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을 위 원칙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에 대한 2014. 9. 11.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C 토지와 피고의 D 토지 모두에 관하여는 국가기록원에 토지 사정 당시의 지적원도가 존재하는 사실, ② 위 지적원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폐쇄지적도 역시 훼손 없이 보관·관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각 토지에 관한 현재의 지적도는 위 폐쇄지적도와 일치하는 사실, ④ 한편 위 각 토지는 1913. 8. 15. 사정이 이루어진 이후 분필 혹은 합필 등을 거침이 없이 그 소유자를 각기 달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각 토지에 관한 현재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 등의 오류로 말미암아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바, 단지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연속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지적도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소유 건물의 경계 침범 여부는 지적도 상의 경계를 토지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의 C 토지와 피고의 D 토지에 관한 현재의 지적도를 기초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청구취지 가.항 및 나.항 기재 피고 소유의 각 건물과 돌담장이 그 기재와 같이 원고의 C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건물과 돌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의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다만, 원고의 C 토지와 피고의 D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측량감정 당시 시행중이던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호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지적공사(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조직이 변경되었다)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호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대법원 재판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7조 제2항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며(제1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감정을 촉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그러나 감정인 E이 위 각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시지사(이하 편의상 '대한지적공사'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에 측량감정을 촉탁하였으나, 대한지적공사는 2013. 7. 17. '원고의 C 토지와 피고의 D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발견되어 구 지적법 제84조 제2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해 측량성과 제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대한지적공사 측이 근거로 든 구 지적법 제84조 제2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측량성과의 착오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경계복원측량은 등록사항이 정정된 이후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앞서와 같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도 등에 어떠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까지 위 각 규정이 원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② 대한지적공사는 2014. 2. 20. 및 같은 해 3. 20.에도 위 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원고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앞서와 같은 취지로 측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점, ③ 이에 제1심법원은 2014. 6. 25.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한측량협회로부터 추천받은 E을 측량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각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도록 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이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지적측량업자 E의 감정의견을 참조하여 위 각 토지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피고 소유 각 건물 및 돌담장 등의 철거 및 인도 범위 등을 확정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토지의 측량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가치가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의 경계 등을 확정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5면의 "각주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2006. 12. 21.부터 1년간 임료 1,760,160원, 2007. 12. 21.부터 1년간 임료 1,860,480원,
2008. 12. 21.부터 1년간 임료 1,992,720원, 2009. 12. 21.부터 1년간 임료 2,065,680원,
2010. 12. 21.부터 1년간 임료 2,184,240원, 2011. 12. 21.부터 1년간 임료 2,275,440원,
2012. 12. 21.부터 1년간 임료 2,412,240원, 2013. 12. 21.부터 1년간 임료 2,676,720원,
2014. 12. 21.부터 2015. 7. 20.까지의 임료 1,856,680원(= 월 265,240원×7개월)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영

판사채희인

판사성준규

별지